
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
2009 전통예술 해외진출
우수프로젝트 공모사업
지원금 집행안내

이 자료는 지원금 신청과 정산 보고 시 지원 선정단체가
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
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(www.gokams.or.kr)
센터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목차

I. 2009 전통예술 해외진출 우수프로젝트 공모사업 개요

II. 지원금 청구 및 지급

III. 지원금 정산

IV. 양식

<서식1. 지원 변경, 취소 신청서>

<서식2. 지원금 신청서>

<서식3. 지원금 정산보고서>

I. 2009 전통예술 해외진출 우수프로젝트 공모 사업 개요

1. 추진현황

| 지원신청 접수기간 | 심사일정 | 최종발표 | 지원금신청 접수기간 | 지원금 지급기간 | 지원금 정산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2009. 3.23 ~ 3.27 | 2009. 4.2 ~ 4.9 | 2009.4.10 | 2009.4.13 ~ 11.30 | 2009.4.20 ~ 12.31 | 사업종료 30일 이내 |

2. 최종선정내역

(단위: 천원)

| 구분 부문별 | 신 청 | | | 선 정 | | |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| 신청수 | 비 율 | 신청금액 | 신청수 | 비 율 | 지원금액 | |
| 계 | 63 | 100% | 2,028,719 | 24 | 100% | 450,000 | |
| 지원 분야 | 해외투어 | 30 | 48% | 1,137,072 | 11 | 46% | 284,500 |
| | 해외 공동기획.제작 | 22 | 35% | 764,027 | 7 | 29% | 109,000 |
| | 해외 홍보.마케팅 | 11 | 17% | 127,620 | 6 | 25% | 56,500 |

II. 2009 전통예술 해외진출 우수프로젝트 공모 **지원금 청구 및 지급**

1. 지원금 청구

- 지원금 신청 시 사업기간, 사업내용, 사업 참가자, 예산규모 등이 지원 신청 시에서 변경이나 취소가 있을 경우, 반드시 <서식1> 지원. 변경 취소 신청서를 사업 시작 2개월 전에 제출하고, 사업변경의 정도에 따라 지원금 삭감 또는 취소 조치함
- 지원 선정 단체(개인)은 <서식2>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여 청구
- 지원금 신청은 사업시작 2개월 ~30일 전부터 가능하며(2009년 4월 20일부터 가능)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지급 완료
- 2009년 4월1일 ~ 4월20일 사이에 일어나 종료된 사업은 <서식2> 지원금 신청서를 4월 중에 제출하고, 5월 중 <서식3> 지원금 정산 보고서를 제출

2. 지원금 지급 조건

- 지원금은 정부 보조금으로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보조금 관리조례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집행하여야 함.
- 지원금은 선정된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항목에만 지출되어야 하며, 지급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

| 사업 지원분야 | 지원 가능 항목 | 지원 불가능 항목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외 투어 지원 | 1. 항공료 전액 또는 일부 2. 화물 운송료 전액 또는 일부 | 1. 행정 인건비 2. 자산취득비 3. 진행비 (공공요금, 식비,통신, 소모품비) |
| 해외 공동 기획, 제작 프로젝트 지원 | 1. 항공료 전액 또는 일부 2. 화물 운송료 전액 또는 일부 3. 제작비 일부 4. 체재비 일부 | |
| 해외 홍보, 마케팅 지원 | - 마켓, 컨퍼런스 및 국제행사 참가 1. 항공료 전액 또는 일부 2. 참가 등록비 전액 또는 일부 - 홍보자료 1. 자료 제작 일부 2. 자료번역 일부 | |

● 지원금은 은행계좌로 송금되며, 계좌명칭은 단체의 경우 대표자 개인 계좌가 아닌 단체명칭을 사용하되, 단체명칭 사용이 어려운 단체는 대표자명칭에 단체명칭의 추가 기재. 예) 김길동 (한국 극단)

● 지원금 집행을 위한 별도의 “지원금 관리통장” 반드시 마련

3. 후원사업 표시

● 지원선정사업은 각종 인쇄물 및 현수막, 홍보물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가 후원하고 있음을 표시해야함.

● 로고 다운로드 방법

- ①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웹하드 접속 (gokams.webhard.co.kr) →
- ② ID: center, PW: 3085 입력 →
- ③ 왼쪽 상단에 있는 **내리기** 폴더 클릭 →
- ④ 아래에서 세 번째 있는 **로고** 폴더 클릭 →
- ⑤ 문화체육관광부와 (재)예술경영지원센터 로고 다운로드

※ 아래의 디자인 중 필요한 로고 선택



4. 지원금 신청시 제출서류

- 지원금 신청서 <서식2> 참조
- 지원금 입금용 은행 통장사본 (본 지원금 관리 전용 은행 통장 신규개설 필수)
- 지원변경 신청서 <서식1> 참조 (단, 지원 신청시와 변동이 있을 경우만 제출)

III. 2009 전통예술 해외진출 우수프로젝트 공모 **지원금 정산**

1. 지원금 정산

- 지원단체(개인)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로 지원금 정산 보고서<서식3> 제출
- 지출내역은 사업비 지출항목별로 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하고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

- **집행증빙 영수증 사본은 '원본대조필' 을 적고 확인날인 후 제출**
 - 세금계산서 등 해당 영수증 원본을 먼저 복사한 후 '원본대조필' 을 적고 '직인' 날인 (원본대조필을 먼저 쓰고 복사하면 안 됨)
 - 집행증빙 영수증 원본은 향후 있을 수 있는 정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지원단체에서 보관

● 거래에 대한 지급증빙

| ① 영수증 | ② 송금증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세금 계산서(계산서), 신용카드 영수증, 금전등록기 영수증 및 간이 영수증(1만원 미만일 경우) 중 해당 사항 반드시 첨부 | 은행 송금증, 인터넷 뱅킹 송금 확인증, 자동화기기 거래 확인증 중 해당 사항 반드시 첨부 |

● 거래 대상에 대한 지급 증빙

- 거래대상에 따라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, 개인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고, 거래를 입증하는 계약서(법인인 경우, 견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)의 사본을 첨부. 개인과 거래를 했을 경우, 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, 별첨한 '지급조서' 양식을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.
- 아래 해당사항에 따라, 필요 제출 서류 참고

| 법인 | 개인 |
|------------|------|
| 사업자 등록증 | 신분증 |
| 계약서 또는 견적서 | 계약서 |
| | 지급조서 |

2. 제출서류

- 정산보고서 1부 <서식3>참조
- 사업관련자료
 - 공연프로그램
 - 공연 또는 행사참가 사진(5매)
 - 공연현황자료 (CD 또는 DVD)
 - 보도자료 및 국.내외 신문.잡지 기사
 - 미팅/부스 방문자 리스트
 - 홍보자료제작물(프레스 패키지, 번역물, 홍보자료, 제작 CD 또는 DVD)
- 영수증
- 송금증
- 거래 대상에 대한 지급 증빙자료
 - 사업장 등록증(법인) 또는 신분증(개인)
 - 계약서 또는 용역 계약서
 - 개인 용역 사용 시, 서식3.지원금 정산 보고서의 아. 지급조서 제출 필
- 본 지원금 관리 전용 은행 통장 사본
 - 은행통장 전체거래내역 복사본 제출 (원본대조필 날인)

3. 유의사항

- 사업의 실질적인 주체와 지원신청단체(개인)가 다를 경우, 두 단체의 역할 분담 또는 관례를 간략하게 기술해서 제출
- 지원금 교부 후, 단체/해외파트너의 사정으로 공연 취소 시, 단체는 교부된 지원금 전부를 반환해야 함
- 본 지원금 관리 전용 은행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전부 반환해야 함. 재단 법인 예술경영지원센터 우리은행 1005-701-400025로 입금
- 정산보고서 제출 시 집계나 클럽 등의 고정물 이외에 어떠한 장치 불가
 예) 호치키스 사용 및 제본 등

- 4. 선정된 모든 단체는 지원 사업 종료 후, 사업 성과에 대한 결과발표를 해야 함. 자세한 사항 추후공지에정.**